

◆ 허가를 받은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대해 (고물영업법 제 7 조, 동법시행 규칙 제 5 조)
【벌칙 10 만엔 이하 벌금】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혹은 변경했을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현 영업소 등에 대한 변경에 관해서는, 아이치현내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서는 아이치현경찰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고처는, 주된 영업소, 그 외 영업소 어느 쪽이나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표시가 붙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증 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소를 변경하기 전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양식 제5호

- ① 주된 영업소를 변경할 때(주된 영업소와 그 외 영업소를 교환할 때)
- ②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점포명 변경, 이전, 신설, 폐지)

◎신고기한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 일전까지입니다.

2 【변경후에 신고】가 필요한 사항...양식 제6호

- ★① 영업자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법인이면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② 법인대표자의 교체
 - ★③ 영업자 및 법인대표자의 예전 성 또는 통칭명(외국국적인 분)의 추가 등의 변경
 - ★④ 고물상의 경우에는 행상을 하는 자인지 아닌지의 구별
 - ⑤ 법인대표자 이외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⑥ 영업소마다 취급하는 고물 구분
 - ⑦ 관리자 성명 및 주소
 - ⑧ 관리자 교체, 영업소를 신설했을 때에 관리자 추가
 - ⑨ 고물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닌지의 구별(URL 변경도 포함)
- ◎신고기한은 변경한 날로부터 14일이내(법인등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입니다.



◆ 표식 게시에 대해 (고물영업법 제 12 조)

【벌칙 10 만엔이하의 벌금】

고물상은 영업소, 가설점포 등 잘 보이는 곳에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표식을 게시해야 합니다.

표식 양식	비고
	1 이 양식은 고물상이 그 영업소 등에 게시하는 표식 양식입니다. 2 재질은 금속, 플라스틱 또는 이와 동일한 정도의 내구성을 지닌 것입니다. 3 색은 남색에 흰색 글자입니다. 4 번호는 허가증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5 도표의 길이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6 「〇〇〇商」의「〇〇〇」부분에는 해당 영업소 등에서 취급하는 고물에 관한 제2조 각호에 정해진 구분(2가지 이상 구분에 걸쳐 고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로 취급하는 고물에 관한 구분)을 기재하십시오. 단, 미술품류에 관해서는「美術品」, 시계·보석품류에 관해서는「時計・宝飾品」, 자동차 및 원동기가 달린 자전거에 관해서는「オートバイ」, 자전거류에 관해서는「自転車」, 사진기류에 관해서는「写真機」, 사무기기류에 관해서는「事務機器」, 기계공구류에 관해서는「機械工具」, 도구류에 관해서는「道具」, 가죽·고무제품류에 관해서는「皮革・ゴム製品」, 금권류에 관해서는「チケツト」로 기재하십시오. 7 하단에는 고물상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고물상 영업 제한에 대해서 (고물영업법 제 14 조)

【벌칙 구금 1 년이하 또는 50 만엔이하의 벌금】

고물상은 그 영업소 또는 거래 상대의 주소,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기 위해, 또는 매각이나 교환 위탁을 받기 위해, 고물상 이외인 자로부터 고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가설점포영업 신고에 대해서 (고물영업법 제 14 조 주의사항)

고물상이 가설점포에서 고물영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가설점포에서 영업을 하기 3 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에 대해 가설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설점포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의 도도부현내에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를 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점포란...예를 들어 영업소 외에 장소에서 행사코너를 설치하여 고물을 매매를 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가설점포에서도 표식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장부 등의 기재에 대해서 (고물영업법 제 16 조)

【벌칙 구금 6 개월이하 또는 30 만엔이하의 벌금】

고물상은 매매 또는 교환을 하기 위해, 혹은 매매 또는 교환 위탁으로 고물을 받거나 또는 건네주었을 때에는 그 때마다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아래 사항을 장부에 기재 등을 해야 합니다.

※ 장부 등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 년간 영업소 등에 비치해 둬야 합니다.

장부 등의 양식

受 入 れ(고물을 매입)										払 出 し(고물을 매도)			
年月日	区分	取引した古物 (취급한 고물)			相手方の真偽を 確認するために とった措置の区 分(及び方法)	取引の相手方 (거래 상대)				年月日	区分	取引の相手方 (거래 상대)	
		品目	特徴	数量		住 所	氏 名	職業	年齢			住 所	氏名
(년월일)	(구분)	(품목)	(특징)	(수량)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하 기 위해 취한 조치 구분 (및 방법))	(주소)	(성명)	(직업)	(나이)	(년월일)	(구분)	(주소)	(성명)

비고 1 「고물을 매입」의 「구분」란에는 매수 또는 위탁 별을 기재하고, 「고물을 매도」의 「구분」란에는 매각, 위탁에 근거하여 인도 또는 반환 별을 기재하십시오. 2 「품목」란에는 품목마다 기재하십시오. 3 「특징」란에는 예를 들어 의류는 「상의, 싱글, 스즈키 성명 기입, 베스트, 짙색 안감이 있음, 바지, 뒷주머니 뒷개가 없음», 시계는 「오메가, 형벌,, 번호, 문자판에 흠집이 있음」과 같이 기재하고, 자동차는 자동차검사증에 기재 또는 기록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및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부에 이미 주소, 성명, 직업 및 나이가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성명 외에 항목에 변동이 없는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현장 검사 및 조사에 대해서 (고물영업법 제 22 조)

【벌칙 검사 거부 등 10 만에 이하의 벌금】



아이치현 경찰직원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사전 연락 없이 영업시간 안에 고물상 영업소, 고물 보관장소 등에 현장검증을 하여, 고물 및 장부 등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검증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